

계 약 서 (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 와 _____(이하 “물류대행사”라 한다)는 「EBS 직영교재(이하 “출판물”이라 한다) 유통 및 재고 관리」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물류대행사”가 “EBS”의 “출판물”에 대한 입고, 배송, 반품, 재고관리 및 보관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호 업무 협조와 신뢰를 구축하여 공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EBS”의 출판사업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있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 용역별 계약단가 및 연간 용역예정량) ① “물류대행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용역별 계약단가 및 연간 용역예정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VAT포함)

용역 구분	연간 용역 예정량	계약 단가	연간계약금액
배본 및 발송	15,380,000부		
반품처리 및 관리	1,070,000부		
보관료	4,290m*12개월		
포장박스 제작	20,000BOX		
합계			

② 「배본 및 발송」 관련 비용에는 서울, 일산 관할 지역을 담당하는 공급거래처, “물류대행사” 소재지역을 담당하는 공급거래처, 그 외 지역은 “물류대행사”의 거점지역(지역별공급소)까지의 모든 운임이 포함된다.

③ 「반품처리 및 관리비」에는 반품수령, 반품검수, 교재별 관리에 대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④ 기타 업무별 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VAT포함)

세트 정합	부록삽지	세트해체	랩핑	재생(3면절단)	기타
77원/부당	55원/부록당	209원/세트당	143원/부당	330원/부당	협의 또는 실비

⑤ “EBS”가 인정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EBS”와 “물류대행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양사는 해당비용을 정함에 있어 근거를 명확히 하여 문서로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내용) ① “물류대행사”는 “EBS”의 “출판물” 배송 및 반품, 입고·재고·출고 관리를 위한 제반 물류 활동과 이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물류대행사”가 대행하는 업무의 내역은 별첨 “과업지시서”와 같으며, 본 계약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EBS”와 “물류대행사”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물류대행사”는 본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그리고 그 외 별도로 정한 지침 및 매뉴얼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물류대행사”는 “EBS”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할 전담팀을 물류 숙련자로 구성하여 업무를 주관하여야 하며, 전담인원의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EBS”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 ① “물류대행사”는 “EBS”로부터 인도 받은 “출판물”에 대한 도난, 화재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② “물류대행사”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물류대행사”는 “EBS”의 업무 요구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물류대행사”는 “EBS”로부터 의뢰받은 출판물의 수량 및 상태를 정확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EBS”의 필요에 의해 재고 실사를 요청할 경우 별첨 “과업지시서” 내역에 따라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물류대행사”는 “EBS”가 대행 의뢰한 업무 및 출판물에 대한 기록(입고등록, 반품 검수 등)을 EBS물류관리시스템(booklogis.ebs.co.kr)을 통해 관리하여야 하며, 실물 증빙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4. “물류대행사”는 계약체결 직후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용창고) ① “물류대행사”는 4,290㎡이상의 “EBS” 전용 창고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분된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물류대행사”는 전용 창고의 공간 면적이 적절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연간용역 예정량 이내에서 해당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③ “EBS”가 입찰시 제시한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공간사용료를 청구 할 수 없다. 단, 물량의 일시적·집중적 증가 또는 장기적인 사용 등으로 추가 공간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비용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물류대행사”가 보관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EBS”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배송기한) ① “물류대행사”는 “과업지시서”에서 “EBS”가 지정한 배송 기일 내에 배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배송 기일은 “EBS”와 “물류대행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일단

결정된 배송기일은 엄수하여야 한다.

③ “물류대행사”는 배송이 지연될 경우 “EBS”에게 지연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EBS”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대금지급방법) ① “물류대행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용역료를 정산하여 청구하며, “EBS”는 청구 내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익월 25일까지 일괄하여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양자가 협의하여 대금 지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용역료 정산은 제3조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1. 배본 및 발송료 : 출고수량을 근거로 지급
2. 반품처리 및 관리비 : 반품수량을 근거로 지급
3. 박스제작 비용 : 박스제작 구입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지급
4. 보관료 : 월정액으로 지급
5. 기타 : 라벨 및 운임(택배 및 퀵서비스) 소요비용은 실비정산

③ “물류대행사”는 원활한 교재 출고를 위해 계약 체결일 이후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교재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경우 “EBS”는 “물류대행사”에게 면적 및 일수를 계산하여 보관료를 지급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① “물류대행사”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 _____ 원을 “EBS”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물류대행사”는 “EBS”에게 제1항의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성격은 위약 벌로서, 제14조(계약해지) 1항에서 5항까지의 조항에 의한 “물류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EBS”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당해 계약보증금은 “EBS”에게 전액 귀속되며,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EBS”는 최고(催告) 등의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보증금(지급하여야 할 용역료 또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현물 등으로 대체 가능)을 환수 및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지체상금 변상) ① “물류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지시서”에서 “EBS”가 지정한 예정된 기일 이내에 용역 수행(배송일, 반품검수 기한일) 을 완료치 않아 “EBS” 판매에 지장을 초래 한 경우, “물류대행사”는 지체 1일당 “EBS”가 발송 위탁한 해당 제품의 출고가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EBS”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기일을 정할 필요가 없거나 예외사항으로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EBS”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기 제1항의 지체상금이 발생되었을 경우, 월별 물류대행비용 지급 시에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변상기준) ① “물류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EBS”가 발송 위탁한 제품이 분실, 파손 및 훼손되었을 시 “물류대행사”는 당해 제품 출고가(학습지원용, 무상지원용, 연구용 등은 판매용 교재의 총판 출고가 동일적용)의 100%를 “EBS”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단, 분실된 제품을 정상품으로 회수하였을 시, 확인된 월의 물류비 정산시환급 적용한다.

② 상기 제1항의 손해배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월별 물류대행비용 지급 시에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고조사) ① “EBS”는 정확한 재고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의 전수조사 및 수시 표본조사(결산 재고실사 포함)를 평일에 실시하며, “물류대행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EBS”는 재고조사 후 발생하는 장부와 실사 차이에 대해 시스템상 재고조정을 시행하며, “EBS”의 필요에 의해 대상교재(폐기/유통교재)별로 실사시기를 달리할 경우, 최종 재고손실금의 산정은 단계별 재고조사 결과를 합산하고 재고손실금 청구는 실사시기별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재고손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재고는 표본조사로 발생한 재고 조정 분은 제외한다.

④ 재고의 Loss 허용률은 0.03%로 하며, 재고손실금은 각 교재별 loss허용률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재고 초과분과 부족분을 합산한다. 이때, 재고의 Loss 허용률은 장부상 남아있어야 하는 재고를 기준으로 한다.

⑤ 재고조사 실시 후, Loss 허용률을 초과하는 재고 부족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변상기준)에 의거하여 재고손실금을 산정한다.

제13조(재고의 인계·인수와 책임) ① 계약종료에 따른 업무 및 재고 파악은 계약종료 1개월 전부터 실시하여 계약종료 시점까지 신규 물류업체에 업무 및 재고 인계·인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② 재고의 인계·인수 시점은 양사가 합의한 재고 조사의 종료시점으로 하며, 양사 및 신규 물류업체가 합의하여 날인한 재고 이관 합의서를 양사 및 신규 물류업체가 보관한다.

③ 재고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진 이후 재고 물량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 및 권한은 신규 물류업체가 가지며, 신규 물류업체는 재고 인수 후 계약 개시일 부터 정상적인 교재 배송업무를 진행한다.

④ 계약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재고 인수인계에 따르는 비용은 신규 대행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EBS”의 정책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 “EBS”와 “물류대행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인수인계 과정에는 신규 물류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물류대행사는 모든 과정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⑥ “물류대행사”가 본 계약 체결시 신규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른 업무 및 재고 인수인계에 협조 및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해지 및 해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요청은 계약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해지시 “EBS”가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출판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물류대행사”는 유예기간 중에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협조가 부실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손실에 대해서는 “물류대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1. “물류대행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2. “물류대행사”가 지속적으로 “EBS”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 이행을 태만히 한다고 “EBS”가 인정할 경우
3. “물류대행사”가 발송 업무 수행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4. “EBS”가 “물류대행사”에게 제공한 제품 및 사업상의 정보 등이 “EBS”의 승낙 없이 불법적으로 외부로 유출되어 “EBS”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5. “물류대행사”가 EBS 에 제공하기로 한 전용보관 공간(면적)이 상이 또는 전용공간 내에 타사 출판물을 보관 또는 취급 할 경우
6. 계약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최고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7. “물류대행사”가 “EBS” 출판물의 입·출고 및 반품 등 제반과정에서 불법 또는 고의로 자료의 위변조, 은닉, 폐기 등을 하여 “EBS”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8. “물류대행사”가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비위에 연루되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위 각호의 조항 외에 “EBS”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이 경우 “EBS”는 “물류대행사”에게 정당하게 지급할 금액과 계약보증금을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20일 이내 반환하고,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일 이전에 “물류대행사”가 투입한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을 상호 합의하에 지급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EBS” 또는 “물류대행사”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해당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물류대행사”가 본 계약의 내용(계약서, 과업지시서, 각종 지침 및 매뉴얼, 입찰시 제안사항 포함)을 이행하지 않아 “EBS”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환수와는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유지) ① “EBS”와 “물류대행사”는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기타 자료(이하 비밀정보) 등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허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EBS”와 “물류대행사”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밀정보의 반환을 이행하여야 한다.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어 폐기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 의무 양도 금지) “물류대행사”는 “EBS”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분쟁해결 및 관할 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으로 한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EBS”와 “물류대행사” 쌍방간에 합의하여 조정한다.

제20조(기타) ① 별첨 과업지시서는 본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며, 본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계약기간 중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EBS”와 “물류대행사”가 협의하여 추가로 약정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이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BS”와 “물류대행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대방에게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 전부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⑤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EBS”와 “물류대행사” 쌍방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EBS”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국교육방송공사 사 장 김 유 열

“물류대행사”